

의안번호	2205662
의 퇴 인	민홍철의원
회 답 일	2024. 11. 20.
추 계 번호	24B525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000만원(연평균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안 제3조의3 신설)	10	10	10	10	10	50	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3 신설 (반려동물진료보험 심의회)	반려동물진료보험 ¹⁾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u>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u> (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제1항) 1. 반려동물진료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및 진단·치료 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u>	의무규정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반려동물진료보험”이란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조의3 신설 (반려동물진료보험 심의회)	○	• 유사 정부위원회 운영 사례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안 제3조의3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위원수는 15명으로, 민간위원은 위원 구성 조항²⁾을 고려하여 11명으로 가정

2) 안 제3조의3(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이나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공무원: 4명(농림축산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
- 민간위원: 11명(수의사회·보험협회 추천인, 반려동물 또는 보험 전문가 등)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는 최근 3년(2021~2022년)간 유사 정부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연간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유사 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례

(단위: 명, 회)

소관	위원회명	위원회 구성			연간 회의개최 횟수			
		정원	공무원	민간위원	2021	2022	2023	연평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21	7	14	3	3	4	3.3
	동물복지위원회	20	5	15	3	3	—	2.0
금융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	14	3	11	3	1	1	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1	11	11	11	11	—
회의개최 횟수(B, 회)	3	3	3	3	3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10	10	10	10	10	50

자료: 유사 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